

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3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08. 30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08월 3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,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담 기구인 「김포 노동권익센터」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

3. 주요내용

-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노동권익센터 이용 자격 및 제한사항(안 제3~4조)
- 노동권익센터 관리·운영에 대한 위·수탁사항 (안 제5조)
- 노동권익센터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, 실업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,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익보호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노동권익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